

#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에 관한 연구

박종성, 김현수, 김덕기, 이영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Study on the Jurisdiction of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Jong-sung Park, Hyun-soo Kim, Deog-ki Kim and Young-ran Le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 principle on the fields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NTQ), and aimed at developing criteria on requirements of the qualification that will be managed as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study, we examined the directions of setting the Jurisdic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through role assignment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sectors. Also, we reviewed related documents, conducted Delphi survey, consulted the expert group and had an interview session for this study.

There are five criteria of the jurisdiction of NTQ presented as follows. First is the field which disturbs social orders or has possibility of harming the good public morals; second, the field that requires high standards of ethics or is directly linked to lif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third, the field which requires national attention for training of manpower as it is an area that is difficult for private sector to approach or it requires national management; fourth, the field which requires repair or maintenance of resources of traditional culture but is difficult for the private sector to have an access to and fifth, the field where it needs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nation in the inter-nation relationships. The concrete and detailed standard on the five criteria is also presented in the study.

**Keywords:**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NTQ), Jurisdiction, Delphi survey

### I. 서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점차 학력사회에서 능력중심사회로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능력중심사회의 도래는 빠르게 경제·사회 환경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교육, 훈련, 자격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는 능력중심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

하고 효과적으로 선도하고자 자격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이 일환으로 자격기본법을 바탕으로 그동안 국가자격 중심의 자격제도 운영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가기술자격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국가자격 검정기관을 다양화 하는 등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 및 민간자격시장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기준의 모호함, 통일성 없는 관리·운영 등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국가자격 내에서 그리고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상호간에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박종성 외, 2003).

자격의 대표적인 형태인 국가기술자격은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국가가 검정을 통해 개인의

논문접수일: 2009년 1월 29일

최종수정일: 2009년 3월 10일

논문완료일: 2009년 6월 12일

† 교신저자: ???

지식과 기술기능을 측정하고 능력을 인정하여, 그에 합당한 자격을 인정해 줌으로써 기술·기능 인력의 능력개발 의지를 고취시키는 물론,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인력 활용의 지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강순희 외, 2003).

특히 국가기술자격은 민간부문의 발달이 미약한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국가주도의 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급속한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국가에서 직접 검정·공급함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를 제공하였고, 연간 450여만 명이 자격검정에 응시하는 등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선도하는 중요한 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였다(김현수 외, 2007).

그러나 2000년대로 들어와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국가의 개입(관할)영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요구되고 있다(이영현 외, 2002). 국가기술자격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자격에 대한 국가의 관할영역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자격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격제도 운영으로 나타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노동부, 2006).

기본계획안에는 국가기술자격으로 관리할 자격영역에 대한 원칙 설정 등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대한 원칙을 설정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할 자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다.

## II.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 1. 자격에 대한 국가의 역할

자격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여 국가가 자격제도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자격기본법에 민간자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시된 국가의 책무와 달리, 현재 정부는 국가 중심적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민간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박종성 외, 2005). 와 함께 국가

개입(정부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이영현 외, 2002).

1996년에 교육개혁위원회는 모든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 하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민 대다수와 관련 있는 일반자격 분야 및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자격 분야를 관장하고, 민간(각종 전문직 단체, 직종별 협회, 기업체 등)은 자격제도 관장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자격을 발굴·운영하면서 자격의 질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역할을 설정하여 국가자격 이외의 자격에 대한 평가인정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특히 민간이 관리하는 자격의 창설을 지원하고 제도 운영을 평가함으로써 민간자격의 공공성과 질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제안처럼 역할 분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자격제도는 상호 경쟁적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 관점 하에서 국가는 민간에서 운영이 가능한 종목을 최대한 이양하고, 민간에서는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청되는, 그리고 국가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자격을 발굴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 2. 자격에 대한 민간의 역할

그동안 국가 중심의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있어서 민간참여가 배제되어 왔으며, 1997년 자격기본법의 제정으로 민간의 참여 기회를 넓혀주었다(박종성 외, 2003).

민간 위주로 국가기술자격 관리·운영의 전환은 국가기술자격 운영에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자격제도 운영을 분권화함으로써 자격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기술자격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간으로의 이양을 가능한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게 자격검정을 위탁할 경우 자격검정의 생명인 신뢰도 저하와 검정단체의 이권 및 부조리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서용호 외, 1997).

공인 민간자격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우수성을 인정해 주는 민간자격으로,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한 후 국가가 제시한 일정 기준을 충족한 민간자격관리자를 국가가 공인해

<표 1> 자격 유형간 역할 분담

<Table 1> roll assignment between qualification types

구분	개념	관련법
국가자격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4항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1항
민간자격	국가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2조 5항
공인민간자격	공인받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관리·운영하는 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

주는 자격으로 ‘공인받은 민간자격관리자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신명훈 외, 2005).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볼 때 이 자격은 민간자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부가 공인해 주고 이에 대해 감독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준국가자격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김덕기 외, 2005).

이상에서 살펴본 자격의 개념을 정의한 관련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역할분담 논의

자격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이 상호 역할분담을 통하여 각각의 특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수행하기 곤란한 자격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직결되거나, 시장실패,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목,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중목 등이다. 또한 업무의 공공성이 매우 높고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자격 분야 등의 전문 분야는 민간 부문의 공정한 관리능력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는 정부의 소관 부서 또는 공공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분야는 각종 전문직 단체, 직종별 협회, 분야별 산업체 등의 전문적 관리 능력이 축적되어 자격증의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분야, 신전문직 자격 등 관련 산업계의 인적 수요가 있고, 정부 부문에는 전문적 검정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련 사업자 단체에서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객관적 자격제도를 창설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는 민간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자격취득자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노동력의 수요자인 산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자격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격의 수급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민간에 대한 국가기술자격검정 금지종목을 점진

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민간부문이 검정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의 성숙을 촉진해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이 공급하기를 꺼려하는 직종의 자격에 한해서만 공급자로서 개입하고, 자격제도의 질 관리를 담당하는 정도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의 방법

1. 문헌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할 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운영할 자격의 기준에 대한 참고자료 등을 살펴보고자 자격제도를 규정한 개별 법령, 자격에 대한 관련 선행연구, 국가와 민간의 역할 관련 보고서 등을 조사하였다.

2. 델파이 조사

가. 조사대상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 관련 전문가 등 50명의 집단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전문가 집단 분포는 <표 2>와 같이 학계 15명(30%), 산업계 11명(22%), 연구기관 12명(24%), 검정기관 8명(16%), 부처 4명(8%)으로 구성되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기간은 2008년 6월 27일

<표 2> 델파이 조사 현황

<Table 2> The summary of Delphi survey

구분	기간	대상	방법
1차	2008. 6. 27 ~7. 14	- 학 계 : 15명	이메일 팩스 전화
		- 산업 계 : 11명	
2차	2008. 7. 23 ~8. 4	- 연구기관 : 12명	
		- 검정기관 : 8명	
		- 부 처 : 4명	

부터 8월 4일까지 총 2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 응답률은 50명 전체 회수로 100%이며, 2차 델파이 응답률은 48명 회수로 96%로 나타났다.

**나.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표 3>과 같이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구분’,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관할영역 구분’으로 대영역을 나누어 델파이 조사를 구성하였다.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구분’에 관하여서는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해야 하는 관할영역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관할영역 구분’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준과 국가기술자격 종목과의 연계 가능성 여부와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의 기준의 구체적 설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3. 전문가협의회**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설정 구분,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수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 관리, 운영해야 하는 자격의 방향 설정 대

한 의견 수렴, 델파이 조사지 검토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국가기술자격법 제 19조의 법령 검토 등을 실시하고자 학계, 산업계, 검정기관, 연구기관, 법률 등의 전문가와 함께 전문가협의회를 실시하였다.

**4. 면담조사**

검정기관, 산업계, 민간자격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범위 설정에 대한 의견 수렴, 국가만이 실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국가자격 간 역할분담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다.

**Ⅳ.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기준 설정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

**1.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기준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신설, 관리·운영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

<표 3> 델파이 조사 내용

<Table 3> The contents of Delphi survey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기초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전공, 취득자격</li> </ul>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관련 사항	-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기준 설정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자격의 신설, 관리·운영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성 및 필요한 이유</li> </ul>
	-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해야 하는 관할영역 기준(안)에 대한 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기준의 타당성 및 응답이유</li> <li>-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li> <li>•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기준의 타당성 및 응답이유</li> <li>-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li> <li>•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워 국가가 담당을 해야 하는 분야’ 기준의 타당성 및 응답이유</li> <li>-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li> <li>•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 기준의 타당성 및 응답이유</li> <li>-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li> <li>• ‘국가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 기준의 타당성 및 응답이유</li> <li>-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li> </ul>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관할영역 구분(민간자격 참여 금지분야) 관련 사항	- 국가기술자격법 제 19조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기준에 대한 의견</li> </ul>

<표 5>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

<Table 5> Rationale for establishing the jurisdic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구분	빈도	백분율(%)
무분별한 자격 발행으로 인한 자격 취득자 및 상대방 피해를 예방하고 자격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 자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31	64.6
국가기술자격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관할 영역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13	27.1
기술자격 중 현장 활용성이 낮거나 불필요한 자격종목을 민간위탁에 등에 활용하는데 필요하다	4	8.3
합계	48	100.0

<표 4>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기준 설정의 필요성

<Table 4> Necessity for establishing criteria for the jurisdic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구분	1차		2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 계	4.53	0.516	4.57	0.514
산 업 계	4.64	0.505	4.45	0.522
연구기관	4.58	0.515	4.45	0.522
검정기관	3.57	1.813	4.00	0.535
부 처	4.50	1.000	4.50	1.000
전 체	4.43	0.890	4.42	0.577

주: 1=전혀 필요하지 않음, 2=필요하지 않음, 3=보통, 4=필요함, 5=매우 필요함, 모름 응답 제외

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4.4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기관별 조사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기관별로는 학계가 평균 4.57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높았고, 검정기관이 평균 4.00으로 가장 낮았다.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기준을 설정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신설, 관리·운영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에 대해 가장 동의하는 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무분별한 자격 발행으로 인한 자격 취득자 및 상대방 피해를 예방하고 자격간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 자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가 6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2.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기준(안)에 대한 의견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를 국가기술자격의 관할 영역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평균은 2.83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이며, 기관별로는 연구기관이 가장 높은 평균 3.10,

<표 6>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의 타당성

<Table 6> Validity for the field which disturbs social orders or has possibility of harming the good public morals

구분	1차		2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 계	3.07	1.280	2.79	0.975
산 업 계	3.18	1.328	2.91	1.221
연구기관	3.25	1.485	3.10	1.287
검정기관	2.88	0.991	2.75	0.886
부 처	2.00	1.414	2.25	1.258
전 체	3.02	1.301	2.83	1.090

주: 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부처가 가장 낮은 2.25로 나타났다.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안)으로는 공권력 관련하여 치안 유지에 요구되는 분야, 개인의 인권을 침해될 수 있는 분야,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국가기술자격의 관할 영역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체 평균은 4.53으로 ‘타당함’ 이상으로 의견이 수렴되었고, 기관별로는 검정기관이 가장 높은 평균 4.88, 산업계가 가장 낮은 4.36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안)으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위태롭게 하거나 대형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분야, 제품이나 물질 등의 유통 시 높은 책임이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워 국가가 담당을 해야 하는 분야(시장실패분야)’를 국가기술자격의 관할 영역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전체 평균은 4.46으로 ‘타당함’ 이상으로 의견이 수렴되었고, 기관별로는 검정기관이 가장 높은 평균 4.88, 연구기관이 가장 낮은 4.18로 나타났다.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워 국가가 담당을 해야 하는 분야(시장실패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안)으로는 국가기간 산업과 관련된 분야, 검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거나 검정수요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 검정 준비와 시행에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민간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표 7>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타당성**

**<Table 7> Validity for the field that requires high standards of ethics or is directly linked to lif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구분	1차		2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 계	4.33	0.976	4.43	0.938
산 업 계	4.45	1.036	4.36	0.674
연구기관	4.55	0.688	4.60	0.516
검정기관	4.63	0.518	4.88	0.354
부 처	5.00	0.000	4.50	0.577
전 체	4.51	0.820	4.53	0.687

주: 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모름 응답 제외

**<표 9>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분야’의 타당성**

**<Table 9> Validity for the field which requires repair or maintenance of resources of traditional culture**

구분	1차				2차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의 동시 참여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	민간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	모름/무응답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의 동시 참여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	민간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
학 계	66.7	20.0	13.3	0.0	57.1	28.6	14.3
산 업 계	72.7	27.3	0.0	0.0	63.6	27.3	9.1
연구기관	58.3	16.7	8.3	16.7	54.5	0.0	45.5
검정기관	50.0	37.5	0.0	12.5	62.5	12.5	25.0
부 처	50.0	50.0	0.0	0.0	25.0	25.0	50.0
전 체	62.0	26.0	6.0	6.0	56.3	18.8	25.0

주: 단위 %

분야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분야’를 국가기술자격의 관할 영역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표 9>와 같다.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자격의 동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56.3%, ‘민간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25%였다.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산업분야’의 세부기준(안)으로는 고유한 우리나라 문화로서 보존 가치가 크고,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 칠기나 한복과 같이 전통문화와 관련된 분야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가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를 국가기술자격의 관할 영역의 기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표 10>과 같다. ‘국가

**<표 8>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워 국가가 담당을 해야 하는 분야’의 타당성**

**<Table 8> Validity for the field which requires national attention for training of manpower as it is an area that is difficult for private sector to approach or it requires national management**

구분	1차		2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 계	4.33	0.976	4.50	0.519
산 업 계	4.55	0.688	4.36	0.505
연구기관	3.83	1.115	4.18	0.603
검정기관	4.38	0.744	4.88	0.354
부 처	4.50	0.577	4.50	0.577
전 체	4.28	0.904	4.46	0.544

주: 1=전혀 타당하지 않음, 2=타당하지 않음, 3=보통, 4=타당함, 5=매우 타당함

<표 10> ‘국가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의 타당성

<Table 10> Validity for the field where it needs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nation in the inter-nation relationships

구분	1차					2차			
	국가기술 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	국가기술 자격과 민간자격의 동시 참여	민간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	모름/무응답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하되 운영은 자격을 갖춘 비영리기관에서	국가기술 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	국가기술 자격과 민간자격의 동시 참여	민간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	모름/무응답
학 계	53.3	33.3	6.7	6.7	0.0	85.7	14.3	0.0	0.0
산 업 계	45.5	36.4	18.2	0.0	0.0	90.9	9.1	0.0	0.0
연구기관	50.0	33.3	8.3	0.0	8.3	72.7	18.2	9.1	0.0
검정기관	50.0	25.0	12.5	12.5	0.0	100.0	0.0	0.0	0.0
부 처	50.0	50.0	0.0	0.0	0.0	50.0	50.0	0.0	0.0
전 체	50.0	34.0	10.0	4.0	2.0	83.3	14.6	2.1	0.0

주: 단위 %

<표 11>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기준

<Table 11> The criteria for the jurisdic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기준
1.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워 국가가 담당을 해야 하는 분야
4.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
5.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

기술자격으로 신설,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83.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국가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의 세부기준(안)으로는 산업기술 보호에 관련된 분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야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에서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가 아닌 자는 자격검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법률적인 기준이 타당하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기준이 추상적이라 구체성을 가진 세부적인 기준 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8%로 가장 많았고,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18.8%,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논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통

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대한 기준(안)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보완하였다.

우선 델파이 조사 결과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기준(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표 11>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되었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 제시된 각각의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서 세부기준의 범위와 실효성, 자격종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기준 1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는 기준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 기준으로 민간자격 참여 금지분야를 판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어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세부 판단기준을 설정하였다. 세부 판단기준으로는 사회치안 유지가 요구되는 분야, 개인의 안전이 침해될 수 있는 분야,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등이다.

기준 2의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

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기준도 추상적 기준으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 세부기준을 설정하였다. 세부기준은 첫째,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직무수행분야, 둘째, 대형사고 발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 셋째, 제품(물건) 및 물질 등의 제조 유통시 기술자로서의 높은 윤리성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이다.

기준 1과 2는 법적인 기준으로 국가자격만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기준 3인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워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도 구체적 세부기준을 5가지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기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인력이 요구되는 분야, 둘째, 특수 설비·장비가 요구되는 자격으로 민간접근이 어려운 분야, 셋째, 검정준비와 시행에 요구되는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민간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 넷째, 검정수요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 다섯째, 전산업의 공통직무분야로서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기준 4인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의 기준은 세부기준 3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통문화와 관련된 기능과 디자인 제조 등 관련분야(칠기, 한복, 대장간, 도자기, 매듭 등), 분야이다. 둘째,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로서 보존 가치가 크고 우리나라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이다. 셋째, 문화재 유지·관리·보수 등에 관한 분야이다.

기준 5인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의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 기술 보호에 관한 분야,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야이다.

## V. 결론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로 그 영역이 정해져있다. 그동안 이 영역을 토대로 국가기술자격을 운영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경제성장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면서 국가기술자격을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모호하다는 지적 등이 대두되어 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은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를 영역으로 하되 국가기술자격을 관할영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준설정이 필요하였다.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관할영역을 설정하기 위해 문헌연구, 면담조사, 전문가 협의회,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의 관할영역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기준으로서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언적인 의미의 관할영역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은 <표 12>와 같다.

둘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법에서 명시된 분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을 관할영역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

<표 12>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의 세부기준

<Table 12> The detail standard for the field which ruins social orders or has possibility of harming the good public morals

기준	세부기준	예시 자격종목
1.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 사회치안 유지가 요구되는 분야(공권력관련 직무 등)	- 화약류제조기사 - 소방기술사 등
	■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분야(사생활조사, 유전자 검사 등)	- 임상심리사 - 직업상담사 등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무면허 의료행위 등)	-
	■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장례문화 등)	-



<표 13>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세부기준

<Table 13> The detail standard for the field that requires high standards of ethics or is directly linked to life, health and safety of the public

기준	세부기준	예시 자격종목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직무수행분야	- 위험물기능장 - 승강기기사 등
	■ 대형사고 발생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분야	- 방사선관리기술사 - 가스기술사 - 화약류관리기술사 등
	■ 제품(물건) 및 물질 등의 제조 유통 시 기술자로서의 높은 윤리성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분야	- 화약류제조기사 - 폐기물처리기술사 등

<표 14>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세부기준

<Table 14> The detail standard for the field which requires national attention for training of manpower as it is an area that is difficult for private sector to approach or it requires national management

기준	세부기준	예시 자격종목
3.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려워 국가가 담당을 해야 하는 분야	■ 국가기간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인력이 요구되는 분야	- 철도차량기사 - 도로 및 공항기술사 - 항만 및 해안기술사 등
	■ 특수 설비·장비가 요구되는 자격으로 민간접근이 어려운 분야	- 원자력발전기술사 - 전기철도기술사 등
	■ 검정 준비와 시행에 요구되는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민간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	- 철도차량정비기술사 - 철도기술사 등
	■ 검정수요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	- 광산보안기사 - 광해방지기술사 - 축산기술사 등

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은 <표 13>과 같다.

셋째,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민간참여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인력의 수요는 있으나 민간이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데는 경제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의 참여를 금지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분야이다.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은 <표 14>와 같다.

넷째,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이다. 이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이나 민간참여를 금지하지 않는 분야이다. 그러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은 <표 15>와 같다.

다섯째,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이 분야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공익성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신설·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이다.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은 <표 16>과 같다.

<표 15>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의 세부기준

<Table 15> The detail standard for the field which requires repair or maintenance of resources of traditional culture but is difficult for the private sector to have an access to

기준	세부기준	예시 자격종목
4.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 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	■ 전통문화와 관련된 기능과 디자인 제조 등 관련분야(철기, 한복, 대장간, 도자기, 매듭 등)	- 한복기능사 - 철기기능사, - 도자기공예기능사 등
	■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로서 보존 가치가 크고 우리나라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	- 한복기능사 - 철기기능사 - 도자기공예기능사 등
	■ 문화재 유지·관리·보수 등에 관한 분야	- 목공예기능사 - 석공예기능사

<표 16>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의 세부기준

<Table 16> The detail standard for the field where it needs to protect the interest of the nation in the inter-nation relationships

기준	세부기준	예시 자격종목
5.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	■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 지적 재산권 관련 분야	-

<표 17>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범위

<Table 17> Scope of the jurisdiction of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자격 분야	기준 1 :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기준 2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범위이나 민간자격 참여가 가능한 분야	기준 3 :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
	기준 4 :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
	기준 5 :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

이상과 같이 제시된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범위는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범위와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범위이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분야는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고,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이나 민간참여가 가능한 분야는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국가기술자격과 민간참여에 대한 관할영역은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국가기술자격의 신설 관리·운영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국가의 책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가만이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의 축소로 일부 국가기술자격 운영영역에 민간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간자격을 활성화할 도모할 수 있다. 민간자격을 활성화를 통해 산업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자격제도의 전환이 가능하다. 셋째, 궁극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의 관리·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

국문요약

본 논문은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에 대한 원칙

을 설정하는 연구로써 국가기술자격으로 운영할 자격에 대한 기준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영역 설정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면담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해 제시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관할영역 기준(안)은 5가지이다. 첫째,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둘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셋째, 국가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한 분야로 민간차원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 넷째, 전통문화 자원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분야이나 민간참여가 어려운 분야, 다섯째, 국가 간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분야이다. 또한 5가지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세부기준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가기술자격, 관할영역, 델파이조사

## 참고문헌

강순희 외(2003). 자격제도의 비전과 발전방향.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교육개혁위원회(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II).  
 김덕기 외(2005). 일본의 자격제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태기 외(1996).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제정 및 직업능력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연구. 교육부.  
 김현수 외(2007). 자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2006).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2007~2009). 노동부 별책자료.  
 박종성 외(2003). 국가기술자격제도 내실화 방안연구(III)-국가기술자격제도의 관리·운영체계의 국가 및 민간의 역할분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종성 외(2005). 민간자격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박종성 외(2006).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명훈 외(1997).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명훈 외(2000).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개편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명훈 외(2005). 자격관리핸드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용철(2002). 자격과 면허의 비교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동임 외(2003). 자격제도의 개선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동임 외(2005). 자격정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동임 외(2006). 지식정보화시대의 신자격제도 구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영현 외(2002).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자격제도의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택수(2006).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 체계개선 방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정윤 외(2003). 국가기술자격제도 내실화방안 연구(IV).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입소(2005). 국가기술자격검정 관리·운영 혁신 방안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2006). 국가기술자격정보.  
 한국산업인력공단(2007). 국가기술자격 가이드북.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2007). Overview of the U.S. Standardization System.  
 Borgatta E. and Borgatta M.,(1992). Encyclopedia of Sociology. Macmillan.  
 Providing City & Guilds Qualifications(2008). A Guide to centre and qualification approval.  
 NCVQ(1991). National Standards for Assessment and Verification.  
 NOCA Standards Development Policies(2008). National Organization for Competency Assurance.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저 자 소 개



### 박종성 (Park, Jong Sung)

1993년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사  
1996년 가톨릭대학교 산업위생학과 석사  
2005년 연세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  
관심분야: 자격제도, 공학교육 등  
Phone: 02-3485-5354

Fax: 02-3485-5378

E-mail: parkjs@krivet.re.kr



### 김현수 (Kim, Hyun Soo)

1993년 서울대 농업교육과 학사  
1995년 동 대학원 농업교육과 석사  
1999년 동 대학원 농업교육과 박사  
관심분야: 자격제도, 직업교육훈련, 평생교육  
Phone: 02-3485-5364

Fax: 02-3485-5378

E-mail: hskim@krivet.re.kr



### 김덕기 (Kim, Deog Ki)

1992년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학사  
1995년 동 대학원 안전공학과 석사  
2005년 동 대학원 안전공학과 박사  
관심분야: 자격제도 및 공학교육  
Phone: 02-3485-5351

Fax: 02-3485-5378

E-mail: dkkim@krivet.re.kr



### 이영란 (Lee, Young Ran)

2007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석사  
2009년 ~ 현재 동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자격제도, 진로교육  
Phone: 02-3485-5339  
Fax: 02-3485-5378

E-mail: young2632@hotmail.com